

제일풍경채 검단 III

부부공동 명의변경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

제일풍경채 검단 III 아파트의 배우자 공동명의를 신청하려는 세대는 당사 견본주택을 방문하시기 전에 아래의 일정, 절차 및 필요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당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 접수 대상

1. 중도금대출 신청 시 채무자 변경이 불가피한 세대
2. 그 외 사유로 부부공동명의를 원하는 세대

※ 중도금 대출 시 차주 변경이 가능한 세대는 반드시 아래 일정 내 공동명의 변경 접수를 진행하셔야 중도금 대출 자제가 진행 가능합니다.

I 일정 및 장소

일시	접수장소
2024.03.22.(금)~2024.03.25(월)(오전 10시 ~ 오후 5시)	당사 견본주택 (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74-1)

I 배우자 공동명의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

①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

- 계약자 본인이 서구청 검단출장소 직접 방문하여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
-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출장소 (1층 총무팀 /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502번길 15 / ☎ 032-718-1517)

② 배우자 공동명의 신청서 작성

- 양도인 & 양수인 당사 견본주택 방문 후 전매동의 신청 및 접수 (양도인은 대리 접수 불가, 본인방문 필수)

③ LH 전매동의 승인 및 계약서 불출

- 사업주체 → LH 전매동의 신청 일괄 접수 → LH 전매동의서 날인 (전매동의서 날인까지 약 4주 이상 소요)
- 계약서 불출 관련은 추후 문자 발송 예정이며 수령 일자 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함.

④ 증여신고

- 계약자가 세무서 방문하여 자진신고
-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※ 증여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I 배우자 공동명의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

구분	장소	구비서류	
		증여자(계약자)	수증자(배우자)
①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	인천 서구청 검단출장소	신분증 / 인감도장 / 증여계약서 / 공급계약서	신분증 / 인감도장
② 배우자 공동명의 신청	당사 견본주택	서구청 검인 증여계약서 / 공급계약서 (계약자 보관용) /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2부 / 주민등록등본 2부 / 가족관계증명서 2부 / 인감도장 / 신분증 ※증여자(계약자)는 대리인 방문 불가	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2부 / 신분증 / 인감도장 ※ 추가서류 안내 - 대리 방문 ▶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, 대리인 신분증 - 분리세대 ▶ 주민등록등본 2부
③ 계약서 수령	당사 견본주택	신분증 (계약서 수령은 증여자 or 수증자 외 대리인 수령 불가)	

I 유의사항

■ 증여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.

-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문양사무실로 사전 서류문의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.
- 상기 구비서류 일체는 발급 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도록 부탁드립니다.
- 수증인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"본인발급"분(해외출국으로 본인 발급 불가시 외교부에서 발급받은 위임장 제출)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동일세대여도 주민등록등본은 증여인(계약자), 수증인(배우자)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(잔금일부 납부) 지자체 판단에 따라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가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필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■ 일체의 제출 서류는 명의변경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기준입니다.

■ 배우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주택의 일부를 증명하는 경우 증여 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